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19. 10.



김정윤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정윤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어린이급식과 관련된 위생, 영양관리 등 제반 지원사업을 체계화 하고자 합니다

###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 센터의 지원대상,
- 안 제4조에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안 제5조와 제6조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과 조직,
- 안 제7조에는 재정지원,
- 안 제8조에는 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검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72021
----------	---------

발의일자: 2019. 10. 11.

발 의 자: 김정윤,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  
배용식, 홍복조, 김화덕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어린이 급식과 관련된 위생, 영양관리 등 제반 지원사업을 체계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안 제3조)
- 다.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4조)
- 라. 운영 및 위탁, 조직(안 제5조, 제6조)
- 마. 재정지원 등(안 제7조, 제8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 제21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하 “구”라 한다)가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검사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5.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